

문서번호	주택과-4223
결재일자	2016.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보도여부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신경식	김경수	임종배	02/16 이동일
협 조			

2016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2016. 2. 15.

강 북 구

2016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지원근거

2016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市 주택정책과-2028, 16. 2. 5.)

II 추진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사용료 지원

III 사업개요 및 실적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3개 단지)

계	번동주공2단지	번동주공3단지	번동주공5단지	비고
4,181세대	1,766세대	1,292세대	1,123세대	

지원예산(16년 공동전기료 산출근거: 14년 공동전기료 사용분×물가변동률(1.17%))

단 지 명	2016년 공동 전기 료 액	지원금 시·구비 구분(단위 천원)			산출액 대비 지원 비율
		시 비 (산출액의 40%)	구 비 (산출액의 60%)	계	
계	308,514	100,000	150,000	250,000	81.03%
주공 2단지	110,686	33,334	50,000	83,334	75.29%
주공 3단지	88,268	33,333	50,000	83,333	94.41%
주공 5단지	109,560	33,333	50,000	83,333	76.06%

○ 시 보조금 교부액 123,406천원(40%), 구 부담액 185,108천원(60%)

○ 시·구 매칭비율 변경(15년도 구 65%, 시 35% → 16년도 구 60%, 시 40%)

○ 구비지원액은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별표1의 4호에 의거 산정

※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지원 예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50,000천원)

2015년도 지원실적

구 분	총 사 업 비			시 보 조 금			구 지 원 금		
	교부총액	집 행 액 총	총 집 행 잔 액	시 비 교 부 액	시 비 집 행 액	시 비 집행잔액	구 비 교 부 액	구 비 집 행 액	구 비 집행잔액
계	270,864,000	226,924,000	43,940,000	120,864,000	79,424,150	41,139,850	150,000,000	147,499,850	2,500,150
주 2 단 지	94,195,000	76,922,000	17,273,000	44,195,000	26,922,400	17,272,600	50,000,000	49,999,600	400
주 3 단 지	86,773,000	73,078,000	13,695,000	36,773,000	25,577,550	11,195,450	50,000,000	47,500,450	2,499,550
주 5 단 지	89,896,000	76,924,000	12,972,000	39,896,000	26,924,200	12,971,800	50,000,000	49,999,800	200

V 세 부 추 진 계 획

■ 지원계획 안내 및 지원신청서 접수: 2016. 2. 15.(월) ~ 29(월)

- 임대아파트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 안내(개별 통지)
- 신청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1부.
 -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1부.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1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검토: 2016년 3월 중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접수된 공동전기료 지원 사항 심의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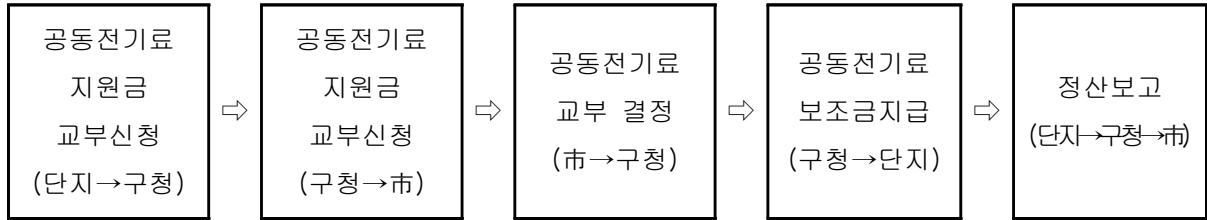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2016년 4월 ~ 12월

- 관리주체로 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산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정산방법: 공동전기료 고지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정산결과: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 보조금 지급절차



V

행정사항

-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안내: 2016. 2. 15.(월) ~ 29(월)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 붙임 1.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시비 보조금 예산집행실적 보고 1부.
3.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 1부.
4.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5.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정산서 1부.
6.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1부. 끝.